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제2011 - 64 - 219호(사건번호 : 201103조사005)

안 건 명 (주)리사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주)리사

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53-4  
대표이사 황보향란

의결연월일 2011. 11. 23.

### 주 문

1. 피심인은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2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. 단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3.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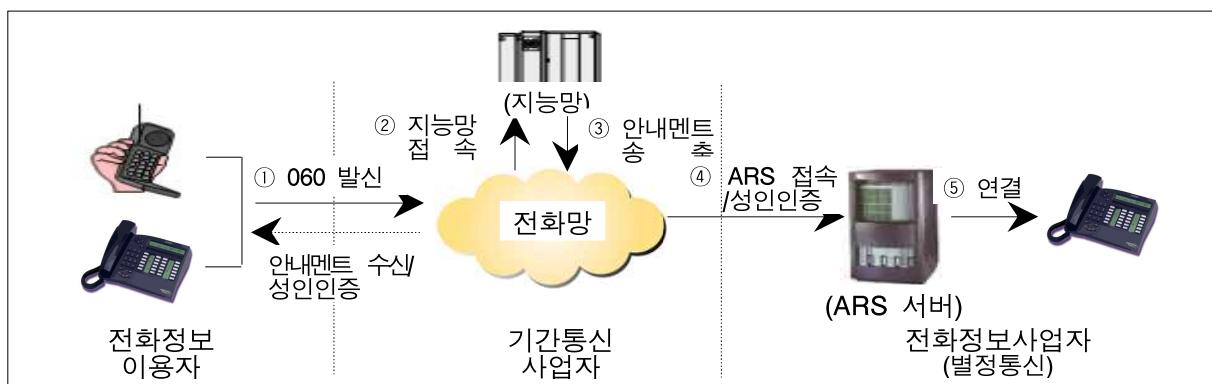
#### 가. 전화정보서비스 개념

- o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(060회선)을 임차하여
  - 음성채팅, 증권정보, 스포츠정보, 경마정보,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.

**< 기간통신사업자별 060 식별번호 >**

LG U+	KT	SKB	온세텔레콤	SK텔링크	비고
60Y	70Y	80Y	90Y	300	Y : 0~9의 숫자

- o 서비스 이용방법은 전화정보이용자가 유·무선전화로 060 번호에 전화하면,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 및 지능망을 거쳐
  - 전화정보사업자의 ARS 장비로 접속된 이후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 인증(주민번호 입력)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.



\* 정보이용 안내사업자 변경('11. 3월) : 전화정보사업자→기간통신사업자

- 한편, 전화정보이용시 이용자에게는 부과되는 이용요금(정보이용료 및 통화료)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되며
  - 전화정보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%를 회수대행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.

#### 나.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일반현황

-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'10년도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은 897백만원 이다.(서비스개시일 '10. 5. 12)

<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0년	2011. 1월	2월	3월	4월	5월
매 출 액	897	108	36	52	4	2

※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- 피심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온세텔레콤과 '전화정보서비스 이용계약'을 체결하고
  - 온세텔레콤으로부터 총 94개의 060 번호를 음성채팅 용도로 부여 받았고, 30초 당 7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.

<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제공현황 >

관련 기간통신사	서비스개시일	060 번호수	비 고
온세텔레콤	2010. 5. 12	94개	음성채팅

#### 다. 피심인의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하여

- 피심인은 060번호를 부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온세텔레콤과 체결한 전화정보서비스 계약(이하 '전화정보서비스 계약')은 온세텔레콤의 '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'을 그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.(전화정보서비스 계약 제2조)

※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 제2조(계약의 정의) ② 본 계약과 관련된 “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”은 본 계약서의 기본취지와 서비스 절차, 전체적 내용을 포괄한 것이며, “업무처리지침”은 본 계약서의 2장 3장 4장 5장의 서비스 진행상의 순수한 처리 절차를 의미한다.

o 온세텔레콤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은 ‘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 정보의 서두부분에 정보이용료(단위시간 및 요금), 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, 제공 정보명 등의 정보 이용안내를 해야 한다’고 정하고 있다.(온세텔레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)

- 피신인은 ‘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’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제한을 위해 성인인증을 하고 있다.

o 또한, 정보의 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에 필요한 일정시간은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(온세텔레콤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)

- 정보이용료가 공제되는 시간(이하, ‘공제초’)은 최소 40초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(온세텔레콤 이용약관 제8조의 위임에 따른 ‘전화정보서비스 업무처리지침 제13장’)

※ 온세텔레콤의 이용약관 제14조(이용안내) ① 정보제공자는 제공정보의 서두 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안내를 해야 합니다.

1. 정보제공자의 상호 또는 성명, 2. 제공정보명 및 정보제공형태
  3. 정보이용요율(단위시간 및 요금), 4. 이용방법
  5. 서비스 이용도중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번호, 6.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
- ② 제공정보의 이용안내 및 이용자가 정보의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일정시간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※ 전화정보서비스 업무처리지침 제13장(실시간대화형서비스 사업신청관리)

- 마. 1) 공제초는 최소 40초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- 2) 공제초는 초기 이용안내방송, 성인인증, 기타 메뉴 선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최대시간으로 설정한다.

## 2. 사실조사 결과

### 가.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

- 방통위에서 '11.2.15.~3.14. 기간 동안 방통위 CS센터 민원, 광고문자 등을 통해 확인된 성인대상 060 번호 710개에 대해 1,402회 정보 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전화녹취하면서 모니터링한 결과,
  - 총 35개 전화정보사업자의 677개 번호가 1,029회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,

<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모니터링 결과 >

모니터링 내역		모니터링 결과(미실시)			비 고
060 번호수	횟수	안내, 성인인증	성인인증	계	
710개	1,402회	520회	509회	1,029회	미실시 업체 : 35개

- 이중, 20회 이상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15개 정보제공사업자를 사실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
-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94개 060 번호 가운데 32개 번호에서 40회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았다.

< 피심인의 060 번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>

관련 기간통신사	모니터링 번호수	모니터링 결과(미실시)		
		안내, 성인인증	성인인증	계
온세텔레콤	32개	40회	-	40회

### 나. 현장조사 결과

- 방송통신위원회에서 '11. 5. 23~7. 8일 기간동안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'10. 1월~'11. 3월 기간중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실시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.

- 방통위 모니터링 기간동안 ('11.2.15.~3.14.) 정보 이용안내와 성인 인증을 미실시한 피심인의 32개 060번호에 대한 당시 전산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고, 피심인은 '당시 서버 장비 오류' 때문에 정보 이용 안내와 성인인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- 피심인은 최초 성인인증을 거쳐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35,000명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'회원'으로 관리하면서
  - 이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.

< 성인인증 없이 정보를 제공한 횟수 >

이용횟수	1~20회	21~50회	51~100회	101~200회	201~1,000회	1,000회 이상
회원수	14,200명	10,000명	5,000명	3,000명	2,100명	700명

※ 자료 출처 : 피심인 제출자료(기간 : '10. 1~'11. 5월)

### 3. 위법성 판단

#### 가. 관련 규정

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는 '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'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3] V-2-라목은 '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'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.

### < 관련 법규 >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“금지 행위”라 한다)를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~4. 생략
  - 5. 이용약관(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)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(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) 제1항의 [별표3]
  - V.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
    - 2-라.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

## 나. 금지행위 위반 여부

-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 동의의 없이 ‘회원’으로 관리하면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피심인의 업무처리절차는
  - 성인 명의의 전화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수단이 없어져 해당 전화 명의인에게 불측의 요금을 부과시키고, 미성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성인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
  - 해당 이용자에게 광고성 스팸발송 등 이용자의 통신이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.
- 또한, 방통위의 모니터링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한 달간 40회 걸쳐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민원을 고려하면 그 빈도나 심각성에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.

#### **4. 피심인 주장**

- 의견 없음

#### **5. 시정조치 명령**

##### **가. 금지행위의 중지**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,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##### **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**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,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×10cm 또는 5단×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. 단,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# **다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**

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,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7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**

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

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.

## 8. 결 론

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52조,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1. 11. 23.

방송통신위원회

위 원 장

최 시 중 (인)

부위원장

홍성규 (인)

위 원

김충식 (인)

## 위 원

# 신용섭 (인)

## 위 원

# 양문석 (인)